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292
----------	-----

제출연월일 : 2014. 2.26

제출자 : 이정율 의원 외 5인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심사기간은 2014년 3월 6일, 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평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3. 참고사항 : 없음

심 사 계 획

1. 활동목적

-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신속한 의사진행

2. 심사안건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각종 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활동기간

- 2014년 3월 6일, 1일간으로 한다.

4. 구 성

- 정문섭 의원, 이만재 의원, 유인환 의원, 박종욱 의원, 이정윤 의원, 장문혁 의원

5. 운영계획

일 시	차 수	내 용	비 고
2014. 3.6 (목)	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평창군 각종 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8.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